

정신과적 응급상황 매뉴얼

I. 정신과적 응급상황 분류

응급단계		설명	환자 유형	대처방안
1단계	긴급	신체적 손상으로 생명소실 및 기능손실이 가능한 경우 (목매, 음독, 손목 그음 등의 자살시도, 자해 또는 난폭행동)	①자살을 시도한 경우 ②급성 정신병적 증상 ¹⁾ 으로 인한 난폭행동	즉시 119 신고 → 구급대 도착 후 가까운 병원 응급실 후송
2단계	응급	응급진료가 요구되며 치료 지연 시 상위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	①적극적, 구체적 자살시도 계획이 확인된 경우 ②자·타해 위험성 뚜렷하지 않으나 급성 정신병적 증상으로 현실검증력 저하된 경우	보호자(가족) 연락 → 학생 상태 파악, 경찰 신고 상의 및 응급 진료 권고 (가까운 병원 응급실 후송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당일 진료) 보호자(가족) 연락 불가 시 → 112 신고 → 안전 확보 후 응급 진료 권고
			공황발작 (수분 내에 최고조에 이르는 극심한 불안감, 숨이 막히거나 가슴이 뛰고 금방 죽을 것 같은 불쾌한 느낌 동반)	발작이 지속되는 경우 → 119 신고 → 가까운 병원 응급실 후송 및 처치 발작이 소실된 경우 → 준응급 상태에 준하여 대처
3단계	준응급	빠른 진료가 필요하지만 응급으로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	① 자살 징후²⁾ 가 있으나 구체적 계획은 없는 경우 ②지속되는 우울, 불안, 불면 등의 증상이 있거나 정신병적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	당일 카운슬링 센터 연락 후 위기개입 상담 → 이후 가능한 빠른 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 상담 거부 시 → ①상담 재권고 + ②24시간 위기상담 가능 연락처 제공 + ③보호자(가족) 연락하여 진료 권고

1) **급성 정신병적 증상** : 환청, 망상, 와해된 언어 및 행동 또는 혼란스럽고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

2) **자살 징후**:

언어적 신호	“죽고 싶다”, “이제 그만하고 싶다”, “전 죽어 마땅해요” 등의 표현
행동적 신호	자살 관련 도구 수집, 자살 관련 사이트 탐색, 신변 정리, 과거 자살 시도 경험 등
정서적 신호	과도한 불안, 초조, 극도의 무기력감 또는 절망감, 강한 죄책감 또는 분노 등
상황적 신호	중요한 인간관계의 상실(이별, 사별, 지인의 자살),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, 심각한 질병 진단 또는 만성질환 등

II. 정신과적 응급 상담번호

	기관명	연락처	업무시간
인문사회과학캠퍼스	카운슬링센터	02-760-1290	주간 (9시-17시 30분)
	건강센터	02-760-1230	주간 (9시-17시 30분)
	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	02-745-0199	주간 (9시-18시)
		1577-0199	주말 및 야간
자연과학캠퍼스	카운슬링센터	031-290-5260	주간 (9시-17시 30분)
	건강센터	031-290-5250	주간 (9시-17시 30분)
	수원시 행복 정신건강복지센터	031-253-5737	주간 (9시-18시)
	수원시 자살예방센터	031-214-7942	24시간

III. 24시간 위기상담 가능 연락처

기관명	연락처	설명	업무시간
중앙자살예방센터	1393	자살예방상담전화	24시간
	1577-0199	정신건강상담전화	24시간
보건복지부 콜센터 희망의 전화	129	자살위기상담	24시간
한국 생명의전화	1588-9191	민간 자살위기상담	24시간

IV.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처방법

신고	①긴급 또는 응급 단계인 경우 119 또는 112 신고, 보호자(가족) 연락 ②준응급의 경우 당일 카운슬링 센터 연락 후 위기개입 상담 또는 보호자(가족) 연락
함께 하기	①현장에 있는 경우 학생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, 추가 도움이 올 때까지 혼자 두지 않기 ②준응급의 경우 당일 카운슬링센터 상담 또는 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동행
위험도구 제거	현장에 있는 경우 자살도구(긴 끈, 약물, 칼, 가위, 번개탄 등) 및 다른 위험 도구(기타 날카로운 물건 등)가 있는지 확인하고, 있다면 숨기거나 멀리 치우기
약물 복용 시 (음독 자살시도)	현장에 있는 경우 복용한 약물의 종류, 용량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(약봉지, 용기, 처방전 등)가 있다면 전문가에게 전달

예시) 학생이 메일로 자살시도를 암시하는 내용을 보냈을 때

구체적 자살시도 계획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자살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면 적극적 자살시도 계획이 확인된 응급 상태로 간주 → **보호자(가족) 연락** → 학생 상태 파악, 경찰 신고 상의 및 응급 진료 권고(가까운 병원 응급실 후송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당일 진료)

* 보호자(가족) 연락 불가 시 → **112** 신고 → 안전 확보 후 응급 진료 권고